

서울회생법원

제2부

등본입니다.

2023. 7. 10.

법원사무관 문형기



문 서 명

자 전환관련등록면허세 등 분할납부허가신청(회생 제2023-23호)

사 건

2020회합100063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2023. 7. 7.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김호춘



판사

양민호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06108)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9(논현동, 팍스타워) / 전화:(02)538-6208 FAX:(02)538-6211

문서번호 : 회생 제2023-23호

담당자 : 박은자 차장(070-4283-7165)

문서일자 : 2023. 7. 7.

사 건 : 2020회합100063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2부

참 조 : 진찬희 관리위원

제 목 : 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 등 분할납부 허가 신청

- 채무자 회사는 2020. 4. 2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귀원으로부터 2020. 8. 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1. 4.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은 회사입니다.
- 채무자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처분청)으로부터 2023. 4.17.경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 받았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예금 및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체납처분(압류, 공매)이 실행될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바, 처분청에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처분청의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사항

가. 채무자 회사의 자본 변동 사항

(단위: 원)

일자(효력발생)	변동 요인	증감	자본금
2021.4.12 이전			200,000,000
2021. 4.1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707,008,223,000	707,208,223,000
2021. 4.13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200,000,000	707,008,223,000
2021. 4.14	출자전환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의 감소	-706,774,011,300	234,211,700

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등록면허세 등' 이라 함) 부과금액

(단위: 원)

과세표준	세목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707,008,223,000	등록면허세	0.004	2,828,032,890	1,044,279,410	3,872,312,300
	지방교육세	0.2	565,606,570	95,734,560	661,341,130
계			3,393,639,460	1,140,013,970	4,533,653,430

* 상기 세금(본세)에 대해 가산금(본세의 3%, 136,009,590원), 중가산금 추가됨

다. 과세 근거

-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단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처분청은 상기 지방세법 단서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에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 처분하였음(첨부 1. 처분청의 납세 고지서 및 독촉(최고)장 고지서 참조)

2. 채납액 분납계획에 대한 허가 사항

가. 분납계획서 제출 목적: 처분청의 채납처분 방지

나. 분납 계획(첨부 2. 채납액 납부계획서 참조)

연도	납부일	납부액	납부일	납부액	연도별 납부액
2023년	7.14	100,000,000	9.27	100,000,000	500,000,000
	12.29	300,000,000			
2024년	3.29	100,000,000	6.28	200,000,000	1,500,000,000
	9.30	200,000,000	12.31	1,000,000,000	
2025년	3.31	100,000,000	6.30	300,000,000	2,700,000,000
	9.30	300,000,000	12.31	2,000,000,000	

* 가산금 136,009,590원 포함하고 2025년 증가산금 포함하여 최종 납부

다. 본 분납계획서의 제출로는 서울시청 또는 강남구청의 채납처분(압류, 공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3.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진행

가. 감사원 심사청구서 제출

- 위법·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를 선택함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가능하며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음

나. 청구 이유(첨부 3.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서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됨
- 일시적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는 부당함
-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존재를 알았다면 등록면허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할증발행방안을 선택하였을 것임
- 재건형과 청산형 절차가 혼재된 청산형 재건방식의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는 부당함
- 등록면허세 등을 포함하였을 경우 회생계획안은 가결되지 않아서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을 것임

- 청산형 재건방식의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함
- 입법주체의 잘못된 권한행사로 인해 법률 상호간에 모순·충돌이 발생한 경우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처분청은 인가결정문의 통지 당시에는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음

상기와 같이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채무자 회사의 예금 및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체납처분(압류, 공매)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청에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최고)장 고지서
 2. 체납액 납부계획서
 3.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서. 끝.

주식회사 벨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16-1)

세무1과 (Tel : 고지서내 담당자 참조)

http://www.gangnam.go.kr

06090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담당자 || 이원직
문의처 || 02-3423-5668

납세
고지서

서울강남
해청우편취급국

요금후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귀하

06108

부과 내역

과세표준 707,008,223,000

* 가산세 상세내역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록면허세	565,606,570
지방교육세	0
농특세	0
합계	565,606,570
납부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록면허세	478,672,840
지방교육세	95,734,560
농특세	0
합계	574,407,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록면허세(등록)

납세 고지서(수시 분)

납세자보관용

전자납부번호 11680-1-20-23-341454800

납세번호

기관번호 6805312

세목번호 50114002

납세년월기 2023042

과세번호 0000090

납세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
과세대상 논현동 231-9 회생법인 증자 무신고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 가능

세목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등록면허세	2,828,032,890	3,988,481,660
지방교육세	565,606,570	681,181,360
농특세	0	0
가산세총액	1,140,013,970	
납부할세액	4,533,653,430	4,669,663,020

납기내	4,533,653,430 원
2023.04.30. 까지	
납기후	4,669,663,020 원
2023.05.31. 까지	

※ 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년04 월2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수납인

담당자 이원직

문의처 02-3423-56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록면허세(등록)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자납부번호 11680-1-20-23-341454800

기관번호 6805312 세목번호 50114002

납세년월기 2023042 과세번호 0000090

납기내 2023.04.30. 까지
4,533,653,430 원

등록면허세 2,828,032,890

지방교육세 565,606,570

농특세 0

가산세총액 1,140,013,970

납기후 2023.05.31. 까지
(3%가산) 4,669,663,020 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납인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 (은행별 납부마감시간 다를 수 있음)

전용계좌 납부 ※ 타행이체수수료 본인부담. 지방세입계좌는 수수료없음

신한	562-03209-155524
우리	770-697802-64-603
KEB하나	102-840144-67337
국민	400-492639-58194
기업	603-063958-97-060
우체국	910069-80-880236
citi 씨티	422-73945-928-67
농협	790-0654-4933-036
Sh 수협	084-4007-4972-739
카카오뱅크	9101-05-4165394
케이뱅크	700-0105-416-5325
지방세입	11680-1-20-23- 341454800
SC제일	
토스뱅크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 (STAX)	· 앱·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핀번호 또는 자문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
이택스 (ETAX)	·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검색 · 회원 : 로그인 즉시 조회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 입력 조회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인터넷	· <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재발행]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가 산 세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사기·부정한 행위 4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사기·부정한 행위 40%) - 납부지연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1십만분의 22 (한도 100분의 7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3%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납부지연일자×1십만분의 22 (한도 100분의 10) - 지출증빙 등 :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 2부터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증가산금이 추가(최고 45%)됩니다. 또한,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계산식 : 본세 + 가산금 (본세의3%) + 증가산금 (본세체납액×0.0075×증가산금 기산 경과월수)					
과세근거	세목	근거법령	세목	근거법령	세목	근거법령
	취 득 세	지방세법 제6조 ~ 제22조의3	주 민 세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의7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3조 ~ 제39조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65	가 산 세	지방세기본법 제52조 ~ 제57조
	레 저 세	지방세법 제40조 ~ 제46조	재 산 세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지방세법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99조, 제103조의8, 제103조의14, 제103조의30, 제103조의39, 제103조의57, 제103조의61, 제153조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47조 ~ 제64조	자 동 차 세	지방세법 제124조 ~ 제140조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제65조 ~ 제73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1조 ~ 제148조		

구제방법 안내

이의 신청	- 위법·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자치구세는 구청장, 특별시세는 시장에게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7장 참조
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안 거친 경우 : 위법·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자치구세, 특별시세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가능(필요적전치주의)
심사 청구	- 위법·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자치구세, 특별시세는 모두 감사원장에게 신청)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가능
신청 방법	-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청구 - 이의신청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동일 처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불복 신청·청구 불가

납부방법 안내

은행 방문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 본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카드 넣음 ~ 타인 :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
납부 매체	- 계좌이체(국내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애플카드
ARS (23시 30분까지)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납부
스마트폰 (STAX)	- 앱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비밀번호, 패턴 등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
이 택 스 (ETAX)	-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검색 - 회원 : 로그인 즉시 조회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 입력 조회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인 터 넷	-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환급 및 전자납부 등 혜택 안내

지방세 환 급	- 스마트폰(STAX)앱 : 조회·신청 - 인터넷 이택스(ETAX), 정부24 : 조회·신청
정기세목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적 립	- 과세 정보를 종이고지서 대신 E-mail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지급 - 적립액 : 건당 30만원 미만 350원, 30만원 이상 850원 ※ 단,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500원만 적립 - 사용 : 이택스에서 세금 및 세외수입 납부, 본인 계좌송금, 기부 등 (ETAX 홈 참조)
정기세목 전자납세자 세액공제	- 정기분 부과 전월 이전 신청자에 한함 - 전자고지만 신청 시 : 건당 250원 -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250원 -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 건당 600원 ※ 납기내 미납시 차감세액이 추징 됨

홍보

내 손안에 기본 좋은 강남

강남의 새 시대를 열어줄 플랫폼

강남에 살고 강남을 찾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앱
강남구 ALL-IN-ONE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

스마트폰으로 더강남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님

06108

지방세 미납시 불이익

-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귀금속, 고가품 등은 압류 후 공매처분
- 예금, 급여, 보험금 등 압류 후 이행(추심) 청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신용정보등록에 의한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
-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등 조치 등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록면허세(등록)

독촉(최고)장 고지서

납세자보관용

전자납부번호 11680-1-20-23-341454800

납세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논현동, 팍스타워)
과세대상 논현동 231-9 회생법인 중자 무신고

납세번호 6805312 세목 50114002

납세년월기 2023042 과세번호 0000090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 가능

세 목	납기 내 금액	가 산 금
등록면허세	3,872,312,300	116,169,360
지방교육세	661,341,130	19,840,230
농특세	0	0
합계세액	4,533,653,430	136,009,590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수납인

세액합계 4,669,663,020 원
납부기한 2023.05.31 까지

※ 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2023.05.31 이후 수납불가

담당자 이원직
문의처 02-3423-5668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록면허세(등록)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자납부번호 11680-1-20-23-341454800

기관번호 6805312 50114002
납세년월기 2023042 과세번호 0000090

납부기한 2023.05.31 까지
4,669,663,020 원

등록면허세 3,988,481,660
지방교육세 681,181,360
농특세 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수납인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 23시 30분까지 납부 가능 (은행별 납부 마감시간 다를 수 있음)

전용계좌 납부 ※ 타행이체수수료 본인부담. 지방세입계좌는 수수료없음

신 한	562-03209-155524
우 리	770-697802-64-603
KEB하나	102-840144-67337
국 민	400-492639-58194
기 업	603-063958-97-060
우 체 국	910-069808-80-236
citi 씨 티	422-73945-928-67
농 협	790-0654-4933-036
Sh 수 협	084-4007-4972-739
카카오뱅크	9101-05-4165394
케이뱅크	700-0105-416-5325
지방세입	11680-1-20-23-341454800
SC제일	
토스뱅크	

온라인 납부

- 스마트폰 (STAX)**
 - 앱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 편번호 또는 지문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
- 이 텍 스 (ETAX)**
 -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텍스> 검색
 - 회원 : 로그인 즉시 조회
 -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 · 납세번호 입력 조회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인 터 넷**
 - 각 <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



미납(체납)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불이익 안내

가산금/증가산금

- 근거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 가 산 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
- 증가산금 : 본세(고지서의 각 세목별 세액)가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
※ 계산식 :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증가산금(본세 × 0.75% × 증가산금 가산 경과월수)

체납처분 행정제재

- | 체납처분 | 행정제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과 유가증권 압류(제48조) - 예금, 급여, 보험료, 국세환급금 등 채권 압류(제51조) -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 압류(제55조) -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등 압류(제56조) -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등 압류(제61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조치 - 매각대상 : 부동산 등(주택, 건물, 토지,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귀중품, 고가품, 출자증권 등 유가증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등 현금화 가능 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인 · 허가, 등록, 신고의 제한 및 취소 •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금금지 요청 등) •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기관 등록, 신용평가 하향, 은행거래 등 불이익 • 지방세징수법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고액 · 상습체납자의 감치) [시행일: 2022.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및 제111조(고발)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안내

수령받은 고지서로 납부가능 안 내

- 본세가 30만원 미만은 증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처음 수령한 고지서의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 가능
(고지서에 「상시수납 가능」 표기됨)
- 본세가 30만원 이상부터는 증가산금이 가산되므로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가능
(고지서에 「상시수납 가능」 이라고 표기되지 않음)

납부방법 안내

은행 방문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 수협 ·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 본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 · 카드 넣음
 - 타인 :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

납부 매체

- 계좌이체(국내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애플카드

ARS (23시 30분까지)

-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납부

스마트폰 (STAX)

- 앱 ·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비밀번호, 패턴 등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

이 텍 스 (ETAX)

-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텍스> 검색
- 회원 : 로그인 즉시 조회
-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 · 납세번호 입력 조회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인 터 넷

- 각 <은행> 홈페이지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환급 및 전자납부 등 혜택 안내

지방세 환 급

- 스마트폰(STAX)앱 : 조회 · 신청
- 인터넷 이텍스(ETAX), 정부24 : 조회 · 신청

정기세목 전자납부 마일리지 적 립

- 과세 정보를 종이고지서 대신 E-mail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지급
- 적립액 : 건당 30만원 미만 350원, 30만원 이상 850원
※ 단,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500원만 적립
- 사용 : 이텍스에서 세금 및 세외수입 납부, 본인 계좌송금,
기부 등 (ETAX 홈 참조)

정기세목 전자납부 세액공제

- 정기분 부과 전월 이전 신청자에 한함
- 전자고지만 신청 시 : 건당 250원
-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250원
-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 건당 600원
- ※ 납기내 미납시 차감세액이 추징 됨

홍보

내 손안에 기분 좋은 강남

강남

강남의 새 시대를 열어줄 플랫폼

강남에 살고 강남을 찾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앱
강남구 ALL-IN-ONE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



스마트폰으로 더강남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체납액(지방세) 납부계획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등록번호	110111-359910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9(논현동,팍스타워)		
	연 락 처	(H.P) 010-3740-0896	(메일)	nmsung2@nate.com

체 납 내 역

세목	과세년월	본세	가산금	계	비고(산출세액)
등록면허세	2023. 4월	3,872,312,300	116,169,360	3,988,481,660	2,828,032,890
지방교육세	“	661,341,130	19,840,230	681,181,360	565,606,570
계		4,533,653,430	136,009,590	4,669,663,020	3,393,639,460

상담내용

● 체납처분 내용

	진행 중인 처분	해제		비고
		요청	처리 여부	
☐	부동산공매			
☐	공공기록정보			
☐	부동산압류			
☐	채권압류()			
☐	번호판 영치			
☐	기타()			

● 월별납부계획 등

연도	납부일	납부액	납부일	납부액	연도별 납부액
2023년	7.14	100,000,000	9.27	100,000,000	500,000,000
	12.29	300,000,000			
2024년	3.29	100,000,000	6.28	200,000,000	1,500,000,000
	9.30	200,000,000	12.31	1,000,000,000	
2025년	3.31	100,000,000	6.30	300,000,000	2,700,000,000
	9.30	300,000,000	12.31	2,000,000,000	

* 2025년 최종 납부 시 증가산금 포함하여 납부

* 귀청의 체납 처분이 있을 경우 비상장 주식의 매각 작업이 불가능함

위와 같이 체납된 지방세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이행시 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023. 7. .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리인 성낙민

강남구청장 귀하

관계법령에서 정한 압류, 매각, 청산 등 일련의 행정처분 및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체납자료

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체납처분은 진행될 수 있음

위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성명 성낙민 (서명)

청 구 취 지

처분청(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2023. 4.17.경 청구인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금 2,828,032,890원, 지방교육세 금 565,606,570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40,013,970원 등 합계 4,533,6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 현황

청구인은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 발행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외부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는 영업활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2020. 4.2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0. 8. 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1. 4.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은 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이며, 회생담보권 15억원을 2021년말에 변제하였고 회생채권 7,751억원에 대해 2024년말까지 4개년에 걸쳐 653억원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회생채권자들에게 잔여자산을 분배 후 법인을 청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경영권 지분의 무상 소각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0.46%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등 2만 7천 여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생관리인이 1인 사내 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2.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됨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단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이하 위 단서를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합니다), 처분청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합니다) 금 3,393,639,460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40,013,970원, 합계 4,533,653,430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66조 제1항 및 제206조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합니다)은 회생법인인 채무자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이 사건 쟁점조항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일시적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의 부당성

- 1) 효력발생일 구분에 따른 일시적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

청구인의 회생계획에서 자본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갑 제1호증,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주주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발채본 참조).

(단위: 원)

일자(효력발생)	변동 요인	증감	자본금
2021.4.12 이전			200,000,000
2021. 4.1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707,008,223,000	707,208,223,000
2021. 4.13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200,000,000	707,008,223,000
2021. 4.14	출자전환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의 감소	-706,774,011,300	234,211,700

청구인 회사는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액의 91.7%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한 후 곧바로 소각하였는바, 청구인의 자본금은 출자전환 전 200,000,000원에서 최종적으로 234,211,70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자전환으로 인해 자본 707,008,223,000원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출자전환된 신주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3,000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3,000대 1 병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산출>

(단위: 원)

과세표준	세목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707,008,223,000	등록면허세	0.004	2,828,032,890	1,044,279,410	3,872,312,300
	지방교육세	0.2	565,606,570	95,734,560	661,341,130
계			3,393,639,460	1,140,013,970	4,533,653,430

234,211,700	등록면허세	0.004	936,840	345,930	1,282,770
	지방교육세	0.2	187,360	31,660	219,020
계			1,124,200	377,590	1,501,790

상기와 같이 자본증가의 과세표준을 707,008,223,000원으로 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은 금 3,393,639,460원이나, 자본증가의 과세표준을 234,211,700원으로 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은 금 1,124,200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청구인의 회생계획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과 출자전환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의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자본 등기 과정에서 효력발생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을 234,211,700원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707,008,223,000원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3,000대 1 병합에 따라 706,774,011,300원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입니다.

- 2)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존재를 알았다면 등록면허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할증발행방안을 선택하였을 것임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신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

다고 믿고 출자전환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만약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에서 제외될 것을 알았다라면 청구인은 신주 액면발행(100원에 신주 1주를 교부) 및 3,000대 1 주식 병합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증발행(300,000원에 신주 1주 발행)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청구인이 이와 같이 할증발행방안을 선택하였을 경우 자본증가의 과세표준이 235백만원 수준이 되어서 등록면허세 등을 2백만원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증발행방안의 경우에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의 총액만큼은 법정자본금(상법 제451조)으로,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는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상법 제459조). 할증발행방안의 경우 발행가액 총액(출자전환액)에서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시가초과발행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런 대가 지급이 없었던 것이므로, 그 실질이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할증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받은 회생법인 등이 각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도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회생기업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향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면제익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5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청구인은 2024년말까지 4개년에 걸쳐 653억원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회생채권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 후 법인을 청

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에서 제외될 것을 알았다더라면 청구인은 액면발행방안 대신 할증발행방안을 선택하였을 것이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익 중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잔여 금액을 법인이 청산되는 2025년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청산형 재건방식의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의 부당성

- 1) 청구인은 재건형과 청산형 절차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성격의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도산절차에는 출자전환, 분할 변제 등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의 계속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해당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와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가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함,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회생채권액의 91.7%의 출자전환, 변제기 유예에 의한 4년간 분할 변제 등으로 채무를 조정한 것 이외에는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청산형 절차에 가깝습니다.

한편 다른 회생기업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어 경영권이 회복되나, 청구인은 회생절차가 종결 없이 진행되다가 회생계획의 수행이 성공할 경우 2025년 이후 회생채권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 후 법인을 청산하게 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이 실패할 경우 회생법원이 견련파산(牽連破産)을 하게 됩니다.

2) 등록면허세 등을 포함한 청구인의 회생계획안은 가결되지 않아서 파산 절차로 이행되었을 것임

청구인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에서 제외될 것을 알았더라면 출자전환 신주의 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3,394백만원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을 것이고 회생채권자의 조의 부동의로 인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아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인의 회생계획안 인가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조의 경우 100% 동의를 받고 회생채권자의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 금 770,975,469,344원 중 금 526,088,951,501원의 찬성 (68.24% 동의)을 받아서 청구인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갑 제2호 증.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조서 참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 회생사건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회생채권액이 7,710억원으로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사건이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관계인집회기일 이전에 채권자 27,229명 중 13,211명으로부터 의결권 위임(위임액 5,143억원, 동의율 66.7%)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겨우 가결선을 넘겼습니다(갑 제3호증. 출석현황 및 의결표 발췌본 참조).

청구인이 시인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한 총채권액 및 변제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조세등채권과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액 7,710억원의 91.7%를 출자전환하였고 이에 따른 현금변제율은 8.3%입니다(갑 제4호 증. 서울회생법원의 인가결정 통지서 중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요지 참조).

(단위 : 원)

구분		시인한 총 채권액	출자전환(권리변경)	변제할 채권액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426,647,648		1,485,626,825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60,829,828,788	55,780,953,735	5,048,875,053
	상거래채권	4,727,989,197	4,335,566,094	392,423,103
	손해배상채권	705,115,128,685	646,590,591,781	58,524,536,904
	특수관계인채권	302,522,674	302,522,674	—
	미발생구상채권	2,704,800,000	미정	미정
	소계	773,680,269,344	707,009,634,284	63,965,835,060
	조세등채권	1,382,047,520	—	1,382,047,520
	계	775,062,316,864	707,009,634,284	65,347,882,580
합계		776,488,964,512	707,009,634,284	66,833,509,406

청구인의 회생채권자들은 거액의 손해를 확정하는, 약 640억원(8.3%)의 현금 변제계획에 대해서도 68.24% 동의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인 가결선을 겨우 넘겼는데, 34억원의 등록면허세 등을 추가 차감하여 약 606억원(7.8%)을 현금 변제 한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회생계획안은 가결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유사한 사례를 보면 1조 7천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2022년 2월경 파산이 선고되었고, 1조원대 사기로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2022년 8월경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환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변제 자원 마련이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만약 약 34억원의 등록면허세 등이 과세되었다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같이 파산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청산형 재건방식의 회생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함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신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출자전환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만약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에서 제외될 것을 알았다더라면 전항의 기술과 같이 등록

면허세 등을 납부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회생계획안은 가결되지 않아서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될 경우 가결될 수 없었던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 신주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청산형 재건방식의 회생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약 34억원의 불이익을 주는 반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이외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청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출자전환 자체가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자본증가에 대한 약 34억원의 등록면허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재산은 회생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환가, 배당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춘천)2017누362 등록면허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개정 당시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3) 더욱이 지방세법의 소관청이자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던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을 보면, 최소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당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지방세법개정 시 이 사건 쟁점조항을 같이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기관 및 전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 여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판단사항이지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9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법률 상호간에 모순·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당해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에 상호 모순·충돌이 발생함을 알면서도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소관부처를 포함한 입법주체의 명백히 잘못된 권한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산인은 재건형과 청산형 절차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성격의 회생절차를 수

행하고 있는바, 입법주체인 행정안전부의 명백히 잘못된 권한행사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조세채권에 따라 처분청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고, 청구인의 회생계획을 신뢰한 회생채권자는 예기치 못한 재산상의 손해를 일방적으로 얻게 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라. 가산세 등 부과의 부당성

1) 가산세 및 가산금/증가산금 부과 내역

처분청은 등록면허세 등 금 3,393,639,460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40,013,970원, 합계 금 4,533,653,43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이를 본세로 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 565,606,570원 (미납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574,407,400원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2022. 6. 6.이전 0.025%)
- 가산금(본세의 3%) : 136,009,590원
- 증가산금 : 본세 x 0.75% x 가산 경과월수

2) 가산세 등 부과의 부당성

입법주체의 잘못된 권한행사로 인해 법률 상호간에 모순·충돌이 발생한 경우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갑 제4호증을 보면 2021. 4. 9. 서울회생법원은 처분청(서울시 강남구청장)에도 인가결정문을 통지하였는바, 별지의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요지의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권리변경(출자전환)액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하단의 5.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서 부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인가결정문의 통지 당시에는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3. 2월경 회생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원발굴 계획을 보고하고 뒤늦게 청구인 등 회생법인들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이 이 사건 단서 규정의 개정 이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여러 회생사건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통지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5. 결론

처분청이 2023. 4.17.경 청구인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금 2,828,032,890원, 지방교육세 금 565,606,570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40,013,970원 등 합계 4,533,6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증 거 서 류

갑 제1호증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주주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발채본

갑 제2호증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조서

갑 제3호증 출석현황 및 의결표 발채본

갑 제4호증 서울회생법원의 인가결정 통지서 중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요지

- 끝 -